

# 『시프트(SHift)』 입주자 모집

## (일반주택 및 고령자주택)

『SHift(장기전세주택)』은 「사는 것」이 아니라 「사는 곳」으로 주거중심의 주택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서울시와 SH공사의 주택정책 일환으로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분양전환 되지 않는 임대주택입니다.」

### 1. 공급현황

지구명 (아파트명)	신청 유형	공급호수					세대별 계약면적(㎡)						구조 · 난방
		계	일반공급		우선 공급	특별 공급	공급면적			기타 공용	지 하 주차장	합계	
			일반	고령자			전용	주거 공용	계				
강일5단지	전용59㎡	60	20	8	32	-	59.870	22.208	82.078	1.705	28.327	112.110	철근콘크 리트벽식 · 지역난방
강일7단지	전용59㎡	52	28	4	20	-	59.870	22.183	82.053	2.159	32.103	116.315	
강일지구	전용114㎡	123	120	-	-	3	114.810	27.308	142.118	2.883	44.877	189.878	
서초두산위 브트레지움	전용84㎡	6	6	-	-	-	84.960	20.810	105.770	3.430	48.360	157.560	철근콘크 리트벽식 · 지역난방
래미안 서초스위트	전용59㎡	16	9	-	3	4	59.995	20.100	80.095	2.286	23.768	106.149	
반포자이	전용59㎡	319	131	-	93	95	59.980	24.760	84.740	5.628	37.462	127.830	
	전용84㎡	100	80	-	20	-	84.943	31.932	116.875	7.971	53.053	177.899	
강서동부센 트레빌4차	전용59㎡	21	9	-	6	6	59.960	15.618	75.578	1.452	28.800	105.830	철근콘크 리트벽식
관악청광 플러스원	전용59㎡	2	2	-	-	-	59.810	18.590	78.400	1.570	19.170	99.140	개별난방

지구명 (아파트명)	신청 유형	전세금액(천원)			해당단지·동(호)	건물 최고 층수	입주 예정	위 치
		계	계약금 (계약시)	잔금 (입주시)				
강일5단지	전용59㎡	93,710	9,371	84,339	5단지	15층	'09.8	강동구 강일동
강일7단지	전용59㎡	93,710	9,371	84,339	7단지		'09.7	
강일지구	전용114㎡	197,120	19,712	177,408	2단지, 9단지, 10단지		'09.5	
서초두산위 브트레지움	전용84㎡	239,320	23,932	215,388	301호, 305호, 401호, 505호, 901호, 1301호	17층	'09.5	서초구 서초동
래미안 서초스위트	전용59㎡	170,000	17,000	153,000	101동	31층	'09.5	서초구 서초동
반포자이	전용59㎡	224,000	22,400	201,600	131동~135동, 139동, 142동, 144동	29층	'09.5	서초구 반포동
	전용84㎡	300,000	30,000	270,000	101동, 103동, 106동~109동, 123동~125동, 130동, 136동~138동, 140동, 141동, 143동			
강서동부센 트레빌4차	전용59㎡	93,330	9,333	83,997	101동, 102동	15층	'09.5	강서구 공항동
관악청광 플러스원	전용59㎡	113,000	11,300	101,700	105호, 205호	13층	'09.5	관악구 봉천동

- 강일5,7단지 전용59㎡는 각 2종(59A, 59A1), 반포자이 전용59㎡는 2종(59A, 59B) 전용84㎡는 4종(84A, 84B, 84C, 84D)의 유형이 있으며 유형별 전세금액은 동일함  
(위 주택의 강일5,7단지 전용59㎡ 면적은 59A형, 전용114㎡ 면적은 9단지 114형, 반포자이 전용59㎡ 면적은 59A형 전용84㎡ 면적은 84A형 기준임)
- 강일지구의 경우 공급호수에서 우선공급은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32조 제5항 내지 제8항에 해당하는 우선공급대상자에게 배정된 호수이고, 특별공급은 동규칙 제19조 제6항에 해당하는 특별공급대상자에게 배정

된 호수를 말함

-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면적이며, 기타공용면적은 지하층, 관리사무소, 노인정 등의 면적임
- 발코니샷시는 일괄시공되어 있으며 강일지구는 거실발코니 확장, 서초두산위브트레지움과 반포자이는 거실 발코니 확장 및 방 발코니 확장(안방 제외)되어 있음
- 위 주택의 입주예정일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당첨자에게 개별 통보함
- 위 주택은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이 혼합 배치된 단지이며, 강일지구(5,7단지)는 임대주택 각 동별로 1층과 2층은 고령자에게 편리한 설계와 시설을 갖춘 고령자용 임대주택으로 건립되어 있음**
- 강일지구내 초등학교는 2009년 9월, 중·고등학교는 2010년 3월 개교 예정임
- 서초두산위브트레지움, 래미안서초스위트, 반포자이, 강서동부센트레빌4차, 관악청광플러스원은 재건축아파트 중 일부를 서울시에서 매입한 임대주택임
- 강일지구 전용 114㎡ 주택의 공급호수는 기 공급시 청약미달로 재공급하는 물량임

## 2. 신청자격

### ■ 공통사항

단독세대주(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인 세대원이 없는자)는 신청할 수 없음  
 단, 단독세대주중 주민등록표등본 구성이 ①사위와 장인 또는 장모 ②며느리와 시아버지 또는 시어머니 ③미혼인 형제·자매(단, 부모의 사망사실이 확인된 경우)로 되어 있는 경우 예외로 함.

### ■ 강일5,7단지(전용 59㎡)

입주자 모집공고일(2009.2.27)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며, 본인과 세대원(동일한 주민등록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전원이 무주택인 세대주로서 아래의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에 해당되는 자

구 분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소 득	가구원수	월평균소득기준	참고사항
	3인이하가구	2,572,800원이하	* 가구원수는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주와 세대원(배우자 및 세대주의 직계존비속)의 합임 * 월평균소득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주 및 세대원의 월평균소득을 합산한 금액임
	4인가구	2,818,440원이하	
	5인가구	2,921,750원이하	
	6인이상가구	3,359,400원이하	
토 지	개별공시지가 기준 5,000만원 이하 ※ 지적법에서 정한 14개 지목(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 광천지, 염전, 대, 공장용지, 주차장, 주유소용지, 창고용지, 양어장, 잡종지)을 대상으로 하여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으로 하되, 농지원부상 농업인과 소유자가 동일한 토지는 제외함(소명의무는 자산소유자에게 있음)		
자동차	현재가치 기준 2,200만원 이하(취득가액을 기준으로 매년 10%씩 감가상각) ※ 비영업용자동차를 대상으로 세대주 및 세대원 각각의 자동차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으로 하되, 자동차등록원부상 장애인사용 자동차는 제외함(소명의무는 자산소유자에게 있음)		

### 《고령자 일반공급 신청자 유의사항》

- 고령자 일반공급 신청자의 경우 상기 신청자격을 갖춘 자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 ① 만65세 이상 ② 만60세 이상 ③ 만60세 미만 자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함

### 《신혼부부 우선공급 신청자 유의사항》

- 신혼부부 우선공급 신청자의 경우 상기 신청자격을 갖춘 자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① 혼인기간이 5년이내고 ②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부한 자만 신청이 가능함
- 신혼부부 우선공급 신청자의 경우 주민등록표등본상 분리된 배우자의 소득 및 자산도 합산하여 산정함
- 혼인기간은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함(재혼 포함)
- 출산은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자녀의 기본증명서상 출생신고일로 판단하며, 입양의 경우에는 입양신고일이 적용됨

### ■ 강일지구(전용114㎡)

입주자 모집공고일(2009.2.27)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만20세 이상인 자(세대주인 경우 만20세 미만 포함)

### ■ 서초두산위브트레지움, 래미안서초스위트, 반포자이, 강서동부센트레빌4차, 관악청광플러스원

입주자 모집공고일(2009.2.27)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며, 본인과 세대원(동일한 주민등록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전원이 무주택인 세대주

### 《우선공급 신청자 유의사항》

- 우선공급 신청자의 경우 상기 신청자격을 갖춘 자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과 서울특별시에 거주한 기간이 각각 1년 이상인 자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만65세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자 (부양여부는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사실에 의함)
  - 민법상 미성년(만20세 미만 - '89.2.28이후 출생자)자인 3명 이상의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주
  - 아래의 소득기준에 해당되는 자(전용60㎡ 이하의 주택만 해당.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이하자)

가구원수	월평균소득기준	참고사항
3인이하가구	2,572,800원이하	* 가구원수는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주와 세대원(배우자 및 세대주의 직계존비속)의 합임 * 월평균소득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주 및 세대원의 월평균소득을 합산한 금액임
4인가구	2,818,440원이하	
5인가구	2,921,750원이하	
6인이상가구	3,359,400원이하	

###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자 유의사항》

-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자의 경우 상기 신청자격을 갖춘 자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① 혼인기간이 5년이내고 ② 아래의 소득기준이하여야 하며

가구원수	소득기준	
	단독별이(100%)	맞벌이(120%)
3인이하가구	3,675,430원이하	4,410,510원이하
4인가구	4,026,350원이하	4,831,620원이하
5인가구	4,173,930원이하	5,008,720원이하
6인이상가구	4,799,150원이하	5,758,980원이하

- ③ 청약저축(청약예금,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부한 자만 신청이 가능함
-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자의 경우 주민등록표등본상 분리된 배우자의 소득도 합산하여 산정함
-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단독별이 소득기준을 넘지 않아야 함
- 혼인기간은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함(재혼 포함)
- 출산은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자녀의 기본증명서상 출생신고일로 판단하며, 입양의 경우에는 입양신고일이 적용됨

### 3. 입주자 선정

#### ■ 일반공급(일반)

아파트명	입주자 선정 방법
강일5,7단지 (전용59㎡)	<p>아래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함</p> <p>① 1순위 : 청약저축 가입 2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24회이상 납입한자</p> <p>② 2순위 : 청약저축 가입 6개월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이상 납입한자</p> <p>③ 3순위 : 1순위 및 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로서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자</p> <p>※ 청약저축을 사용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후에도 동일한 통장을 재사용하여 분양주택 또는 임대주택에 신청 할 수 있음</p>
·서초두산 위브트레지움 ·래미안 서초스위트 ·반포자이 ·강서동부 센트레빌4차 ·관악 청광플러스원	<p>① 1순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주로서 무주택기간과 서울특별시에 거주한 기간이 각각 1년이상인 자</p> <p>② 2순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주로서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자</p>

#### ■ 일반공급(고령자)

구 분	입주자 선정 방법
입주자 선정순위	<p>아래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함</p> <p>① 1순위 : 만65세 이상('44.2.27 이전)인 자</p> <p>② 2순위 : 만60세 이상('49.2.27 이전)인 자</p> <p>③ 3순위 : 만60세 미만('49.2.28 이후)인 자</p>
동일순위 경쟁시 입주자 선정	<p>동일순위내 경쟁시 아래의 배점을 합산한 순위대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동일한 점수인 경우에는 추첨으로 입주자를 선정함</p> <p>① 세대주 나이 - 75세 이상 : 3점 - 70세 이상 75세 미만 : 1점</p> <p>② 세대원수가 2인 이상인 경우 : 1점(동일주민등록표상 등재된 세대원에 한함)</p> <p>③ 서울시 거주기간 - 10년 이상 : 3점 - 5년 이상 10년 미만 : 2점 - 1년 이상 5년 미만 : 1점</p> <p>④ 사회 취약계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에 해당하는 경우 : 2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차상위계층에 속한 자 : 1점</p> <p>⑤ 장애인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동일주민등록표상 등재된 세대원에 한함) 전원 해당] - 제2급 이상 : 2점 - 제3급 이하 : 1점</p>

## ■ 일반공급(강일지구 전용114㎡)

순위	입 주 자 선 정 방 법
공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2순위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가점제를 적용(3순위 추첨제 적용)하여 입주자를 선정하고</li> <li>· 가점제 점수는 가점항목의 점수를 합한 점수로 산정하며 가점제 점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에 따름</li> <li>· <b>유주택자가 당첨시 입주전일까지 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모두의 소유주택을 처분하여야 입주 가능함</b></li> <li>· 같은 세대 안에서 2주택 이상 중복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그 중 하나의 주택을 선택하여 계약체결 하여야 함</li> <li>· 만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은 신청자격 판단시에는 무주택으로 인정함</li> </ul>
1순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치금액이 1,000만원인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한 자</li> <li>·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본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으로 평형변경 후 신청일 현재 1년이 경과한 자</li> <li>·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된 1순위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본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li> <li>· ※ <b>1호 또는 1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b> [청약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포함), 본인 또는 배우자의 세대원 중 만60세 미만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직계비속인 세대원 전원] <b>는 1순위 청약 불가</b></li> </ul>
2순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치금액이 1,000만원인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월이 경과한 자</li> <li>·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본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으로 평형변경 후 신청일 현재 6개월이 경과한 자</li> <li>· 1순위자 중 상기 1순위 청약제한 대상자에 해당되는 자</li> </ul>
3순위	· 1순위 및 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 ■ 우선공급(강일지구 전용59㎡)

대 상 자	입 주 자 선 정 방 법
① 노부모부양자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1년이상 부양하고 있는 자(부양여부는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사실에 의함)
②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단, 배우자가 정신지체인, 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인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함)
③국가유공자 등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한 5.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특수임무수행자 또는 그 유족으로서 국가보훈처장이 우선공급대상자로 선정하여 통보한 자
④ 장기복무 제대군인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에 따른 장기복무 제대군인으로서 국가보훈처장이 우선공급대상자로 선정하여 통보한 자
⑤중소기업근로자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중소기업청에서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자
⑥3자녀이상가구	민법상 미성년(만20세 미만 - '89.2.28이후 출생자)자인 3명 이상의 자녀가 있는 세대주
⑦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북한이탈주민
⑧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⑨소년소녀가정 아동 보호·양육 조부모 또는 친인척	소년·소녀가정으로 시장·구청장이 추천하는 자 「아동복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가정위탁을 통하여 아동을 보호·양육하는 조부모 또는 친인척으로서 시장·구청장이 추천하는 자
⑩65세 이상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44.2.27이전) 고령자
⑪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중 자격 상실자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계약자)중 자격상실자로서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 ※ 영구임대주택 입주여부는 주민등록표등본상의 주소지로 판단함

<b>⑫ 비닐간이공작물거주자 등</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닐,부직포 등으로 건축되어 그 전부 또는 일부가 주거의 용도로 제공되는 간이공작물에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그 거주사실이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통보된 자(비닐간이공작물거주자) 중 무주택세대주(2007년 11월 21일 이전부터 해당 비닐간이공작물에 거주하고 있는 자에 한정함)</li> <li>○ 비닐간이공작물거주자이었던 자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로부터 전세임대주택을 공급받은 자 중 무주택세대주</li> <li>※ 단,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32조 제7항의 자격으로 1회 이상 우선공급을 받은 자는 제외</li> </ul>
-----------------------	---

**■ 우선공급(강일지구 전용59㎡)**

대상자	구분	입주자 선정 방법(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32조 제8항)
신혼부부	신청자격	청약저축에 가입한지 6개월이 경과하여 6회이상 납입한 자
	입주자 선정순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순위를 정함 ①1순위 : 혼인기간이 3년이내이고, 그 기간에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자 ②2순위 : 혼인기간이 3년초과 5년이내이고, 그 기간에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자 ③3순위 : 혼인기간이 5년이내인 자
	동일순위내 경쟁시 입주자 선정	동일순위내 경쟁시 아래의 순서대로 입주자를 선정 ①자녀수가 많은 자 *재혼시 전배우자와의 사이에서 출산한 미성년 자녀 포함 ②자녀수가 동일할 경우 추첨으로 입주자 선정

**■ 우선공급(래미안서초스위트, 반포자이, 강서동부센트레빌4차)**

대상자	입주자 선정 방법		
①노부모부양자(전용59㎡·84㎡ 해당)	1순위에 해당하는 자로서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이상 부양하고 있는 자(부양여부는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사실에 의함)		
②3자녀이상가구(전용59㎡·84㎡ 해당)	1순위에 해당하는 자로서 민법상 미성년(만20세 미만 - '89.2.28이후 출생자)자인 3명 이상의 자녀가 있는 세대주		
③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자(전용59㎡만 해당)	1순위에 해당하는 자로서 다음의 월평균소득기준 해당자		
	가구원수	월평균소득기준	참고사항
	3인이하가구	2,572,800원이하	* 가구원수는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주와 세대원(배우자 및 세대주의 직계존비속)의 합임 * 월평균소득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주 및 세대원의 월평균소득을 합산한 금액임
	4인가구	2,818,440원이하	
	5인가구	2,921,750원이하	
6인이상가구	3,359,400원이하		

**■ 특별공급(래미안서초스위트, 반포자이, 강서동부센트레빌4차 전용59㎡)**

대상자	구분	입주자 선정 방법
신혼부부	신청자격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청약저축에 가입한지 6개월이 경과하여 6회이상 납입한 자 - 청약예금(300만원 이상)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된 자 - 청약부금에 가입한지 6개월이 경과하여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납입하여 300만원 이상을 납입한 자
	입주자 선정순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순위를 정함 ①1순위 : 혼인기간이 3년이내이고, 그 기간에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자 ②2순위 : 혼인기간이 3년초과 5년이내이고, 그 기간에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자 ③3순위 : 혼인기간이 5년이내인 자
	동일순위내 경쟁시 입주자 선정	동일순위내 경쟁시 아래의 순서대로 입주자를 선정 ①자녀수가 많은 자 *재혼시 전배우자와의 사이에서 출산한 미성년 자녀 포함 ②자녀수가 동일할 경우 추첨으로 입주자 선정

※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19조의 자격으로 1회 이상 특별공급을 받은 자는 제외, 일반공급신청자로 전환 불가

## ■ 특별공급(강일지구 전용114㎡)

대상자	입주자 선정방법(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19조 제6항)	유의사항
3자녀 이상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20세 미만('89.2.28이후 출생자)인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주. 단,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19조의 자격으로 1회 이상 특별공급을 받은 자는 제외	특별공급신청자가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경우에는 일반공급 신청자로 전환되지 않음

## ※ 우선공급 및 특별공급 배정호수

아파트명	유형	계	우선											특별	
			노부모부양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장기복무 제대군인	중소기업 근로자	3자녀 이상 가구	북한이탈주민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등	65세 이상 고령자	영구임대 입주자격 상실자	비닐간이 공작물 거주자 등	신혼부부	3자녀 이상가구
강일5단지	전용59㎡	32	1	1	2	1	1	1	1	1	1	2	5	15	-
강일7단지	전용59㎡	20	-	-	-	-	-	-	-	-	-	2	4	14	-
강일	전용114㎡	3	-	-	-	-	-	-	-	-	-	-	-	-	3

아파트명	유형	계	우선			특별
			노부모부양자	3자녀 이상가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자	신혼부부
래미안 서초스위트	전용59㎡	7	1	1	1	4
반포자이	전용59㎡	188	31	31	31	95
	전용84㎡	20	10	10	-	-
강서동부 센트레빌4차	전용59㎡	12	2	2	2	6

- 강일지구 전용59㎡ 우선공급 신청자가 배정호수를 초과할 경우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32조에 의한 순위 및 배점기준으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우선공급 탈락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일반공급 신청자로 전환됨. (단, 국가유공자 등과 장기복무 제대군인은 국가보훈처에서 선정하여 통보한 순위에 의함)
- 래미안서초스위트, 반포자이, 강서동부센트레빌4차 전용59㎡·84㎡ 우선공급 신청자가 배정호수를 초과할 경우 아래(동일순위 경쟁시 입주자 선정기준)에 의한 배점기준으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우선공급 탈락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일반공급 신청자로 전환됨.
- 우선공급 및 특별공급 신청미달로 인한 잔여세대는 일반공급 대상으로 전환됨.

## 4. 동일순위 경쟁시 입주자 선정기준

### ■ 강일지구(전용59㎡)

아파트명	구분	3점	2점	1점
강일5,7단지 (전용59㎡)	① 세대주 나이	50세이상	40세이상 50세미만	30세이상 40세미만
	② 부양가족수	3인이상	2인	1인
	③ 서울시 거주기간	5년이상	3년이상 5년미만	1년이상 3년미만
	④ 민법상 만20세 미만 자녀의 수 ('89.2.28이후 출생자)	3자녀이상	2자녀	-
	⑤ 만65세 이상('44.2.27이전)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1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경우 : 3점			
	⑥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중 제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임원제외) : 3점			
	⑦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로부터 1년이상 건설근로자퇴직공제증지를 교부받은 건설근로자 : 3점			
	⑧ 청약저축 추가납입회수 - 각 순위별 최저 납입회수보다 12회이상 추가 납부한 자 : 2점 - 각 순위별 최저 납입회수보다 6회이상 추가 납부한 자 : 1점			
	⑨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자중 청약저축 가입자 : 3점			

- ※ 위 배점을 합산한 순위대로 선정하되, 동일점수인 경우에는 추첨에 의함
- ※ ⑤,⑥,⑨의 가점은 주택공급에 관한규칙 제32조 제5항에 의한 우선공급 입주자 선정시에는 적용 제외
- ※ 부양가족은 본인과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배우자,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포함) 및 형제·자매 [만20세 미만('89.2.28이후 출생자) 또는 만60세 이상('49.2.27이전)인 자에 한함] 를 말함
- ※ 서울시 거주기간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까지 연속하여 서울시에 거주한 기간을 의미함

### ■ 재건축아파트(일반공급 및 우선공급)

아파트명	구분	5점	4점	3점	2점	1점
·서초두산위브트리지움 ·래미안서초스위트 ·반포자이 ·강서동부센트레빌4차 ·관악청광플러스원	①서울시거주기간(만20세 이후)	20년이상	15년이상 20년미만	10년이상 15년미만	5년이상 10년미만	5년미만
	②무주택세대주기간	20년이상	15년이상 20년미만	10년이상 15년미만	5년이상 10년미만	5년미만
	③세대주나이	50세이상	45세이상 50세미만	40세이상 45세미만	35세이상 40세미만	35세미만
	④부양가족수	5인이상	4인	3인	2인	1인
	⑤미성년(만20세미만)자녀의 수	-	-	3자녀이상	2자녀	1자녀
	⑥만65세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이상 부양하고 있는 경우 : 2점(부양여부는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사실에 의함)					

- ※ 위 배점을 합산한 순위대로 선정하되, 동일점수인 경우에는 추첨에 의함
- ※ ⑤,⑥의 가점은 우선공급(노부모부양자, 다자녀가구) 입주자 선정시에는 공히 미적용
- ※ 부양가족은 본인과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배우자,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포함) 및 형제·자매 [만20세 미만('89.2.28이후 출생자) 또는 만60세 이상('49.2.27이전)인 자에 한함] 를 말함
- ※ 서울시 거주기간은 만20세 이후부터 기산하며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까지 연속하여 서울시에 거주한 기간을 의미함
- ※ “무주택세대주라” 함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포함)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를 말함

### ■ 장일지구(전용114㎡) 가점 산정기준

가점항목	가점상한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① 무주택 기간	32	1년 미만	2	8년 이상~9년 미만	18
		1년 이상~2년 미만	4	9년 이상~10년 미만	20
		2년 이상~3년 미만	6	10년 이상~11년 미만	22
		3년 이상~4년 미만	8	11년 이상~12년 미만	24
		4년 이상~5년 미만	10	12년 이상~13년 미만	26
		5년 이상~6년 미만	12	13년 이상~14년 미만	28
		6년 이상~7년 미만	14	14년 이상~15년 미만	30
		7년 이상~8년 미만	16	15년 이상	32
② 부양 가족수	35	0명	5	4명	25
		1명	10	5명	30
		2명	15	6명이상	35
		3명	20		
③ 입주자 저축	17	6월 미만	1	8년 이상~9년 미만	10
		6월 이상~1년 미만	2	9년 이상~10년 미만	11
		1년 이상~2년 미만	3	10년 이상~11년 미만	12
		2년 이상~3년 미만	4	11년 이상~12년 미만	13
		3년 이상~4년 미만	5	12년 이상~13년 미만	14



가입기간	4년 이상~5년 미만	6	13년 이상~14년 미만	15
	5년 이상~6년 미만	7	14년 이상~15년 미만	16
	6년 이상~7년 미만	8	15년 이상	17
	7년 이상~8년 미만	9		

### ① 무주택기간 적용기준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입주자저축 가입자를 포함한 세대원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배우자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여야 함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6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으로서 주택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주택 1호 또는 1세대만을 10년 이상 계속 소유한 자로서 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자(배우자 포함)는 그 기간동안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봄. 이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르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에는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을 주택가격으로 봄
- 무주택기간은 입주자저축 가입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입주자저축가입자의 연령이 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한다. 이 경우 입주자저축 가입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함

### ② 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

-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세대원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미혼인 자녀로 한정하며,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미혼의 손자녀를 포함)] 으로 한다. 다만,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배우자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부양가족으로 봄
-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은 입주자저축 가입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 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이상 계속하여 입주자저축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봄
-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입주자저축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봄

### ③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적용기준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함

## ■ 강일지구(114㎡) 3자녀 특별공급 우선순위배점표

평점요소		총 배점	배점기준		비 고
			기 준	점수	
계		100			
자녀수 (1)	미성년 자녀	40	4자녀 이상	40	자녀(입양아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 20세 미만인 경우만 포함
			3자녀	35	
	영유아	10	2명이상	10	영유아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 6세 미만의 자녀
			1명	5	

세대구성 (2)	10	3세대 이상	10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 * 직계존속은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3세대는 직계존비속으로 구성
		2세대	5	
무주택 기간 (3)	20	세대주 나이가 40세이상이면서 무주택기간 10년이상	20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 배우자, 직계존비속을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세대주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 무주택자 기준은 '주택소유에 관한 유의사항' 참조
		세대주 나이가 35세이상이면서 무주택기간 5년이상	15	
		무주택기간 5년 미만	10	
서울특별시 거주 기간 (4)	20	10년 이상	20	세대주가 서울특별시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
		5년 이상 ~ 10년 미만	15	
		1년 이상 ~ 5년 미만	10	
		1년 미만	5	

(1), (2) :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 (3) : 국토해양부 등 주택소유 전산검색으로 확인, (4) : 주민등록 등본이나 주민등록 초본으로 확인

※ 동점자 처리

①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② 자녀수가 같을 경우 세대주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 5. 신청접수일정

구분	접수 일정	대상자	신청장소
인터넷 청약자	2009.3.9(09:00) ~ 3.13(17:00)	우선공급 대상자	인터넷청약( <a href="http://www.i-sh.co.kr">www.i-sh.co.kr</a> )
	2009.3.10(09:00) ~ 3.13(17:00)	일반공급 1순위자	
	2009.3.16(09:00 ~ 17:00)	일반공급 2순위자	
	2009.3.17(09:00 ~ 17:00)	일반공급 3순위자	
방문 접수자	2009.3.9 ~ 3.13(09:00 ~ 17:00)	우선, 특별공급 대상자	SH공사 1층 로비 (지하철 3호선 대청역)
	2009.3.10 ~ 3.13(09:00 ~ 17:00)	일반공급 1순위자	
	2009.3.16(09:00 ~ 17:00)	일반공급 2순위자	
	2009.3.17(09:00 ~ 17:00)	일반공급 3순위자	

- 선순위 신청자수가 공급세대의 150%를 초과할 경우에는 후순위 신청접수는 받지 않음.
- 우선공급 및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1순위자 접수결과는 2009.3.16 09:00 공사홈페이지에 게시함
- 특별공급대상(3자녀 이상 가구 및 신혼부부) 신청자는 방문접수만 가능함
- 일반공급 3순위자 미달시 2009.3.18(09:00 ~ 17:00)일부터 선착순 모집하되 방문접수만 가능

## 6. 청약 신청 안내

※ 아래 서류 이외에는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시 제출하오니, 신청자는 계약시 구비서류를 참고하여 신청서를 작성·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서에 기재한 사항만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며, 만일 계약체결 시에 신청서에 기재한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제출서류가 누락될 경우[자격요건(무주택여부, 월평균소득, 토지, 자동차), 주민등록번호, 부양가족수, 배우자 유무, 서울시거주기간, 자녀수, 노부모부양여부, 청약납입인정횟수 등] 부적격으로 처리하여 당첨이 취소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시 신청자의 착오 기재 등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으니 신청서를 정확하게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신청 완료 후에는 수정이 되지 않습니다.

## ■ 방문신청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 신혼부부 우선, 특별공급신청자
  - 3자녀이상 특별공급신청자
  - 미성년 자녀가 2인이상이나 주민등록표등분으로 확인이 안되는 자
  - 주민등록표등분에서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 만65세 이상인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1년 또는 3년이상 부양하고 있는 세대주로서 주민등록표등분으로 직계존속의 관계가 확인이 안되는 경우
- 혼인관계증명서, 자녀의 기본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신혼부부 우선, 특별공급신청자만 해당)
- 국민주택공급신청서 1통  
(청약저축 1,2순위자 및 신혼부부 우선, 특별공급 신청자의 경우만 해당은행에서 발급)
- 주택공급신청서 1통  
(청약예금 1,2순위자 및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자의 경우만 해당은행에서 발급)
- 신분증 및 도장
  - ※ 제3자 신청시(본인, 직계가족 및 배우자 이외에는 대리 신청으로 간주)
    - 직계가족 및 배우자가 신청시 : 대리신청인(신분증 및 도장), 신청인(도장 및 주민등록등본1통)  
다만, 주민등록등본상 분리되어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통
    - 제3자 신청시 : 위임장(신청인의 인감 날인된 위임장) 1통, 신청인의 인감증명서1통 및 인감도장, 대리신청자의 신분증 및 도장
- 장기전세주택 공급신청서 또는 특별공급신청서(공사 소정양식)

## ■ 인터넷 신청안내

청약자의 편의를 위해 공사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 가정이나 사무실 등에서 인터넷으로도 청약이 가능하도록 인터넷 청약을 시행하오니 많이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인터넷 청약시 유의사항

신청자가 입력한 내용을 근거로 당첨여부가 결정되며, 계약 체결시에 제출 서류와 대조하여 신청내용이 누락되거나 다를 경우[자격요건(무주택여부, 월평균소득, 토지, 자동차), 주민등록번호, 부양가족수, 배우자 유무, 서울시거주기간, 자녀수, 노부모부양여부, 청약납입인정횟수 등] 당첨 취소되거나 신문공고나 공사홈페이지에 게시한 공고내용을 정확히 인지한 후 해당서류를 발급받아 신청하여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월평균소득은 반드시 2007년도 소득금액증명서(관할세무서 발급) 등 해당서류를 발급받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인터넷 청약방법

공사 인터넷 주택공급 홈페이지(www.i-sh.co.kr) 에서 회원가입 후, 해당 접수일에 공인인증서 및 청약납입인정 횟수 등을 확인하고 공사 인터넷 주택공급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인터넷 청약

- 신청순서 : 공사 인터넷 주택공급 홈페이지(www.i-sh.co.kr)에 접속 → 공사홈페이지 회원 로그인 → 인터넷 청약에서 해당 아파트 선택 → 무주택서약서 체크 → 청약신청서 작성 → 작성 청약서 최종확인 → 공인인증서 인증 확인
- 공인인증서는 5대 인증기관(금융결제원, 증권전산원, 한국정보인증원, 한국전자인증, 한국무역정보통신)의 공인인증서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들 기관 중 하나를 소지하셔야 인터넷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 납입인정회차 등 확인방법

- 청약저축 및 청약예금 가입은행 방문 → 주택공급신청서 발급 → 납입인정회차 등 확인
- ※ 주택공급신청서를 해당순위 접수일까지 가입은행에서 발급받아 계약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청약납입인정회차는 통장에 표기된 회차기준이 아닌 주택공급신청서상 회차를 기준으로 하여야 합니다.

### ○ 신청시간

인터넷 청약시간은 신청접수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청약마감시간까지 청약신청을 완료(저장 기준)하여야 함. 따라서 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신청하지 마시고, 미리 인터넷에 접속하여 여유있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청약시 최종확인 완료 하시면 수정이 불가능하고 청약신청 후 취소는 해당순위 신청마감 일시까지만 가능하니 청약신청서 작성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7. 동호추첨 및 당첨자 발표

### ■ 동호추첨

- 주택의 동.호는 신청유형별로 동별, 층별, 향별, 형별 구분없이 무작위 전산추첨함
- 각 신청유형별로 신청자의 수가 공급호수를 초과할 경우에는 공급호수의 50%이상의 예비 입주자를 선정하여 미계약 또는 계약취소 세대 발생시 예비순위에 따라 공급함(예비입주자 순위는 당첨자와 함께 게시하고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는 유효기간은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까지임)

### ■ 당첨자발표

- **당첨자발표 : 2009.4.13(월)**  
우리공사 홈페이지(<http://www.i-sh.co.kr>) 및 우리공사 게시관
- **당첨자의 주소 변경 등으로 계약안내문과 계약금고지서가 도달되지 아니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신청자는 당첨여부를 필히 확인하시어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여 미계약으로 인한 당첨취소 등의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8. 계약일시 및 구비서류

■ **계약장소** : SH공사 1층 장기전세팀

■ **계약일시** : 2009.5.11(월) ~ 5.15(금) 09:00 ~ 17:00

### ■ 구비서류

- ① 계약금납부영수증 ② 인감증명서 1통 ③ 인감도장 ④ 신분증
- ⑤ 건강(의료)보험증 사본(원본지참) :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이 표시되어야 함(강일지구 전용 59㎡ 및 재건축아파트 신혼부부 및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이하인자만 해당)  
※ 배우자를 포함한 세대원이 두개 이상의 건강보험증에 분리하여 등재되어 있는 경우 각각의 사본을 모두 제출
- ⑥ 소득입증서류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세대주 및 만20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함 (강일지구 전용 59㎡ 및 재건축아파트 신혼부부 및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이하인 자만 해당)

해 당 자 격		소득입증 제출서류	발급처
근로자	일반근로자	·'07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직인날인) 또는 '07년 소득금액증명서(재직증명서 첨부)	·해당직장 ·세무서
	2008년, 2009년 신규취업자 또는 이직자	·'08년('09년) 월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 (직인날인) 또는 '08년('09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재직증명서 첨부)	·해당직장
자영업자	일반과세자, 면세사업자, 간이과세자	·'07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사업자등록증 사본	·세무서
	간이과세자 중 소득세 미신고자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증명 또는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증 사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수급자 증명서	·동사무소
신규사업자 등 소득입증서류를 제출 할 수 없는 자		·국민연금정보자료통지서/국민연금보험료납부증 명서 또는 최근의 부가가치세 신고서 ·사업자등록증 사본(사업자인 경우)	·국민연금관리공단 ·세무서 ·세무서
비정규직근로자, 일용직근로자		·총급여액이 명시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 급여 명세표(직인날인) 또는 근로소득지급조서(직인날 인)	·해당직장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무직자		·'07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비사업자 확인 각서(공사 소정양식)	·세무서 ·계약장소

※ 소득 입증의 책임은 당첨자에게 있으며, 소득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첨이 취소될 수 있음

⑦ 가점대상자 준비서류(강일지구 전용 59㎡ 해당자에 한함)

가 점 대 상 자	제 출 서 류	발 급 처
중소제조업체근로자 (상시근로자수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 이하의 중소제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사본, 재직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소득세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해당직장
1년이상 건설근로자퇴직공제증지를 교부받은 자	퇴직공제금적립내역서 또는 건설근로자복지수첩(원본 지참)	건설근로자공제회

⑧ 비닐간이공작물거주자 : 비닐간이공작물거주자 확인각서(공사 소정양식)

⑨ 가족관계증명서(인터넷청약자만 해당)

- 신혼부부 우선,특별공급신청자
- 미성년 자녀가 2인이상이나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확인이 안되는 자
- 주민등록표등본에서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 만65세 이상인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1년 또는 3년이상 부양하고 있는 세대주로서 주민등록표등본으로 직계존속의 관계가 확인이 안되는 경우

⑩ 혼인관계증명서, 자녀의 기본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신혼부부 우선,특별공급신청자 중 인터넷청약자만 해당)

⑪ 주택공급신청서(국민주택공급신청서) 1통(가입 해당은행에서 발급)

※ 계약은 본인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에만 배우자 또는 직계가족에 한하여 대리할 수 있음(단, 배우자이외의 자가 대리할 경우에는 본인이 작성한 위임장을 제출해야 함)

## 9. 유의사항

- 이 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 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 전세금액은 최초 임대차계약기간 동안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게 적용되는 금액이며, 입주기간 중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전세금액(임대보증금)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이 주택의 공급대상은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무주택세대주이어야 합니다.
- 1세대(본인+배우자+세대원) 1주택만 신청(강일지구 전용 114㎡는 1인 1주택 신청 가능)할 수 있으며, 1 주택을 인터넷과 방문으로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되고, 같은 세대 안에서 2주택 이상 중복 당첨된 경우에는 그 중 하나의 주택을 선택하여 계약체결 하여야 하며, 주택신청시 기재한 사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계약시까지 유지하여야 합니다.
-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 이후에는 취소나 정정이 불가능 합니다.
- 계약체결 후라도 제출한 서류가 위조 또는 사실과 다름이 판명되거나 주민등록법령을 위반한 경우와 서류의 결격,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된 경우에는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됩니다.
- 무주택소유여부 및 자산보유기준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내에 증빙서류(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동 기한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은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6조 제3항, 제21조의2”에 따릅니다.
- 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임대차기간 종료전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분양전환되는 주택 포함)에는 이 주택을 우리공사에 명도하여야 하며, 우리공사 임대주택을 포함한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또는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이 주택에 입주하기 전에 기존 임대주택을 명도하는 조건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명도하지 않을 경우 전부 무효 처리 됩니다.
- 팜플렛 및 견본주택 등 각종 홍보물에 기재된 조감도, 단지배치도, 입체 평면도 등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시공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인쇄 및 편집과정에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이 주택은 양도, 전대할 수 없으며 이 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발코니샷시 설치로 발코니창, 콘크리트 난간 및 천장 등에 실내외 온도차이로 인한 결로가 발생할 수 있

으니 입주자께서는 수시로 샷시창을 열어 실내공기를 환기시켜 결로를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에 사용된 제품은 자재품질, 품귀, 제조회사의 도산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동질의 타사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강일지구 전용59㎡의 경우 재계약시 입주기준소득을 초과한 입주자는 주택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국민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규정에 의거 전세금액의 할증 또는 퇴거시킬 수 있습니다.
- 장기전세주택 입주신청자격인 무주택세대주, 토지 및 자동차보유기준(강일지구 전용 59㎡만 해당) 등을 위반할 경우, 계약이 취소되거나 갱신계약을 하실 수 없습니다.
- 강일지구 2, 5단지 및 6단지와 7단지 사이에 초등·중등·고등학교가 소재하고 있어 인접 단지는 주간 소음 발생이 우려됩니다
- 강일지구 911동~913동 전면에 열병합발전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 강일지구 인근에 강일2지구 공사가 2010년 12월까지 진행될 예정으로 소음, 분진 및 공사차량에 의한 교통 소음 관련 불편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주택공급에관한규칙” 및 “임대주택법” 등 관계법령에 의합니다.

## 10. 임대 문의



- 대표전화·인터넷청약관련 문의 : 1600-3456(시프트콜센터), 02-120(다산콜센터), 02-3410-7448~7454
- 당첨확인 : 우리공사 홈페이지(<http://www.i-sh.co.kr>) 및 우리공사 게시판
  - ※ 유선확인은 착오가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우리공사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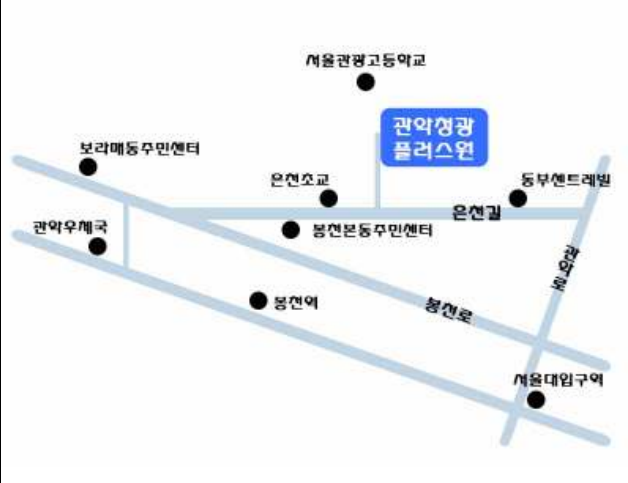
## 11. 견본주택 공개

※ 견본주택 방문시는 주차공간이 협소하므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 분	강일지구	서초두산위브트레지움
위 치	강동구 강일동 강일도시개발지구내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310-4번지 일대
교통편	상일동역(5호선)3번출구에서 버스(3413, 361, 마을버스5번)승차 강동공용차고지 하차	강남역(2호선) 5,6번 출구에서 도보 5분
기 간	2009.3.7(토) ~ 3.13(금) 10:00 ~ 17:00	2009.3.7(토) ~ 3.8(일) 10:00 ~ 17:00
공개호수	59㎡ •일반: 701동 302호•고령자: 503동 201호 114㎡ •일반: 1001동 302호	•101동 301호
비고	-	아파트 1개동 중 임대 6세대
약도		




구 분	래미안서초스위트	반포자이	
위 치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310-6,7번지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20-1번지	
교통편	강남역(2호선) 5,6번 출구에서 도보 10분	반포역(7호선) 2번출구에서 도보 5분	
기 간	2009.3.7(토) ~ 3.8(일) 10:00 ~ 17:00	2009.3.7(토) ~ 3.10(화) 10:00 ~ 17:00	
공개호수	•101동 104호	59㎡ •142동 401호	84㎡ •141동 402호
비 고	아파트 3개동 중 임대 16세대	아파트 44개동 중 임대 419세대	
약 도			

구 분	강서동부센트레빌4차	관악청광플러스원
위 치	서울시 강서구 공항동 71-1호	서울시 관악구 봉천동 622-37번지
교통편	송정역(5호선) 4번출구에서 도보 10분	봉천역(2호선)6번출구에서 도보 10분 (관광고등학교 앞)
기 간	2009.3.7(토) ~ 3.8(일) 10:00 ~ 17:00	2009.3.7(토) ~ 3.8(일) 10:00 ~ 17:00
공개호수	•102동 201호	•205호
비 고	아파트 3개동 중 임대 21세대	아파트 1개동 중 임대 2세대
약 도		

**주택소유여부 확인 및 판정기준**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6조 제3항)**

- 검색대상 : 신청자와 그 세대원 및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와 그 세대원 전부
- 검색범위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소재 주택.  
(주택의 공유지분 또는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간주)
-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경우
  1.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21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 가. 사용승인후 20년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 나. 85제곱미터이하의 단독주택
    - 다. 소유자의 본적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21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3월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20제곱미터이하의 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호 또는 2세대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는 제외한다.
  6. 만60세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직계존속 부양으로 인한 우선공급의 경우에는 제외)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21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2009. 2. 27

 SH공사 사장